



특수형태근로자 및 배달종사자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 특성에 따라 특화된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다.

1 안전보건조치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.

적용대상	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
보험설계사·우체국 보험 모집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게시설 구비 - 공기정화설비 가동,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- 책상·의자의 높낮이 조절,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 -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
건설기계운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, 청결 유지, 적정 조도 유지 등 -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, 안전난간 설치, 비상구 설치, 통로 및 계단의 설치 등 -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, 위험물질 보관 등 - 보호구의 지급, 관리 -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,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, 작업지휘자의 지정,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등 - 추락의 방지,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, 조명의 유지 등 -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, 계측장치의 설치 등 - 비계의 재료 및 구조, 조립, 해체 및 점검 등, 강관비계 및 간관틀비계 등 - 말비계, 이동식비계, 시스템비계, 통나무비계 안전조치 등 - 기계기구 탑승의 제한, 원동기,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,

적용대상	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
<p>건설기계운전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전시작전 조치, 고장난 기계의 정비,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, 제한 속도의 지정,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- 양중기 정격하중 등의 표시, 방호장치의 조정 등 - 크레인 경사각의 제한,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,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등 - 이동식크레인 설계기준 준수, 경사각의 제한 등 - 리프트 권과 방지, 붕괴 등의 방지,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, 화물의 낙하 방지 등 - 곤돌라 운전방법 등의 주지 - 승강기 조립 등의 작업 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, 섬유로프 등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방지,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,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등 - 지게차 헤드가드, 좌석 안전띠 등 - 구내운반차 제동장치, 연결장치 -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- 화물자동차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-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, 접촉 방지 등 - 향타기 및 향발기 조립 해체 시 점검사항, 무너짐의 방지,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, 도르래의 부착 등 -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, 조립도,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시의 안전조치, 조립 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,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-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, 발파작업의 위험방지,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등 - 터널 지보공의 재료, 붕괴 등의 방지 등 - 교량작업 시 준수사항채석작업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, 운행경로 등의 주지 등 - 잠함 내 작업 등 -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-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-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등 -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방지, 벌목의 신호 등 - 열차 운행 감시인의 배치, 열차의 점검수리 등 - 궤도 보수, 점검작업의 위험방지 - 터널, 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등

적용대상	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
<p>골프장 캐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작업(장)의 지형·지반·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- 휴게시설, 세척시설, 구급용구 등의 구비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-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·교육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치, 부동침하 방지등 조치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- 꽃음접속기 설치·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등 -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-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나.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다. 휴게시간의 연장 라.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마.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 제출 <p>※ 단, 나목부터 마목까지 조치는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</p>

적용대상	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
택배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, 청결 유지, 적정 조도 유지 등 -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, 안전난간 설치, 비상구 설치, 통로 설치 등 -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, 위험물질 보관 등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(장)의 지형·지반·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- 크레인·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 종사 금지 -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·교육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할 것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원동기 정지,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는 등 필요한 사항 준수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기계유도자 배치, 근로자 접촉 방지, 화물 적재 시 안전조치 등 -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 -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·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 -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,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실시 -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-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확인 -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
퀵서비스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-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 제한 지시 -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-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
대리운전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
제품 방문점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, 보호구의 지급, 보호구의 관리 - 중량물의 제한, 중량의 표시, 작업자세 등 -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

적용대상	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
<p>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, 보호구의 지급, 보호구의 관리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(장)의 지형·지반·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- 추락의 방지,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- 기계기구의 탑승의 제한, 장갑의 사용금지, 작업도구 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- 이동식크레인 설계기준의 준수, 안전밸브의 조정 등 -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- 가스용접 등의 작업, -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, 접지, 감전방지, 등 - 배선 등의 절연피복,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,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,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-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사, 중량물의 제한, 작업자세 등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
<p>화물차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(장)의 지형·지반·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의 방지, 접촉의 방지, 화물적재 시 조치,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,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- 화물자동차 승강설비,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- 위험물 등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및 대피 - 부식성 액체 압송설비 -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사, 중량물의 제한, 작업자세 등 -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
<p>화물차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게시설 설치,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등 -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사, 중량물의 제한, 작업자세 등

2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

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- 1**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
- 2**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*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

*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,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

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

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

건설기계운전원, 골프장 캐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,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가. 교육시간

적용대상	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
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	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,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)
특별교육	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
	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

나. 교육내용

산업안전 및 사고예방,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사항,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등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[별표5]참조